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70 발의연월일: 2024. 10. 18.

발 의 자:전용기・이기헌・민병덕

이수진 • 정준호 • 신정훈

김용만 • 이소영 • 황운하

김용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검찰의 기소권-수사권 분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권이 점차 경찰로이전 중인 정책 환경 속에서, 금융증권범죄 수사의 핵심인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음으로 말미암아사건 수사 시 경찰이 검찰을 거쳐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임.

이로 인해 검찰-경찰 간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수사권 정상화 정책 기조의 취지가 준수되지 아니하고, 양 기관 간의 동등한 위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시도하더라도 통보의 인정권한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존재하여 양 측의 의견 충돌 시 인지 수사가 난항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, 나아가 현행 정보요구권 또한 수사가 아닌 소추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가 위법적으로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음.

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통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도록 하고, 그 통보대상에 검찰 외의 수사기관을 포함하며,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78조의3).

법률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8조의3제1항 중 "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"를 "검찰총장,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(이하 "수사기관의 장"이라 한다)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통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또는 소추를 위하여 통보및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했 제178조의3(불공정거래행위 통보 제178조의3(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)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 등) ① -----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 건이 제173조의2제2항. 제174 조,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 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 ----검찰총장,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(이하 "수사 하여야 한다. 기관의 장"이라 한다)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---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 이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따른 통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수사기관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 의 장은 수사 또는 소추를 위하 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여 통보 및 관련 정보를 요구할 제공할 수 있다. 수 있다.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 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에 따라야 한다.